

법과대학 장학내규

제 1 조 (목적) 본 내규는 법과대학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본 내규는 본교 법과대학 에 적용한다.

제 3 조 (장학사정위원회)

- ① 장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사정위원회를 둔다.
- ② 장학사정위원회는 법과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전공지도교수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장학사정위원회의 간사는 법학부 교무과(계)장으로 한다.
- ④ 장학사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 1. 장학정책의 수립
 2. 장학추천자의 선발
 3.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 사항

제 4 조 (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등)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, 교외장학, 기타장학으로 구분하며,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의 종류,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본교 장학규정에 따른다.

② 교외장학의 지급기준 등은 장학금을 기탁한 국가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이 정한 바에 따르며,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 내규에 따른다.

제 5 조 (장학금의 지급제한) ① 다음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장학생인 자가 학칙, 학생생활규정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
 2. 휴학자 (단, 1년 이하의 휴학기간중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)
 3. 성적경고자
 4. 학사지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
 5. 취득학점이 15학점 미만인 자
- ② 다음의 자는 입시 장학금 수혜에서 제외된다.
1. 지급기간 중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성적기준에 미달한 경우
(단, 다음학기 성적이 수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혜자격이 회복)
 2. 수강 신청한 교과목 중 한과목이라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
 3. 기숙사 및 고시반에 입실하지 않거나, 고시반 규칙을 위반하여 퇴실 조치된 경우
 4. 3학년 재학중 사법고시 1차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
 5. 일반 휴학을 할 경우

제 6 조 (이중지급 금지) ① 본 내규에 규정된 각종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장학사정위원회 심의 및 학장결정으로 이중 지급할 수 있다.

② 우수장학, 모범장학 및 고시장학의 중복수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혜금액이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, 수시로 사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 7 조 (장학금 지급기한) 장학금 지급기한은 학기제로 한다.

제 8 조 (장학금 신청) ①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서를 학장에 제출하여야하며,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. (단, 입시장학 및 외부장학의 경우는 장학사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할 수 있다.)

② 장학금 신청은 매학기 정해진 신청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장학추천) 법과대학 소속교수는 법과대학생으로서 성적, 품행, 가정형편, 학업성취도 등을 고려하여 상담지도학생중 장학생 후보자를 장학사정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신청서류) 장학금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

- ① 장학금 신청서
- ② 상담기록부
- ③ 보훈장학의 경우 국가유공자(자녀)증명서 1통(서울북부보훈지청 발행)

제 11 조 (장학생 선발) 법과대학장은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장학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.

제 12 조 (공고) 법과대학장은 장학생 추천자 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등록) 장학생은 해당학기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영어성적) 우수장학 및 고시장학B의 TOEIC, TOEFL, TEPS의 점수 반영은 법과대학 모든 학생에게 적용하되, 장학사정은 2002학년도 2학기부터 실시하고, 그 반영 비율은 장학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 15 조 (보칙) 본 내규에 없는 사항은 본교 장학규정에 따른다.

부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내규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시행일) 본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3 조 (시행일) 본 내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